

特別市長, 提案理由는 現行 督促狀 告知書가 發付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 현실성 결여로 地方稅法 第27條第3項의 規定과 동일한 기간으로 延長 調整코자 하는 것입니다.

主要骨子는 現行 納期 經過 後 7日 이내를 改正案은 納期經過 後 15日 이내로 調整하는 것입니다.

檢討意見은 本 條例는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의2第3項 但書規定에 의하여 課徵金徵收에 관한 條例로 母法 但書規定은 아래와 같습니다.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의2第3項 但書, 「課徵金은 交通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徵收法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다만, 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된 경우에는 條例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法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이와 같은 根據條項에 의하여 本 條例 第3條第2項 「市長은 納付義務者가 課徵金을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納付期限 經過 後 7日 이내에 10日 이내의 納付期間을 정하여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다.」로 規定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納付期限 經過 後 7日 이내를 15日 이내로 延長코자 하는 것은 督促狀 告知書를 發付할 수 있는 期間을 延長하는 것으로 督促狀 發付期間이 너무 짧은 현실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思料됩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永和 지금까지 交通局長과 專門委員의 說明과 檢討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課徵金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와 答辯이 있겠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交通局長을 상대로 一問一答式으로 進行을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永和 그러면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課徵金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李永和 異議 없으시다 하므로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自動車運輸事業에 관한 課徵金徵收條例中 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과정금징수조례
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정금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2항중 “7일 이내”를 “15일 이내(은행 납입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地下部分土地使用에 따른補償基準에 대한 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50分)

○委員長 李永和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地下部分土地使用에 따른補償基準에 대한 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먼저 地下鐵建設本部長이 나오셔서 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禹命奎 地下鐵建設本部長입니다. 地下部分土地使用에 따른補償基準에 대한 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都市鐵道法이 90년 12월 31일 改正이 되었고, 이 法 施行을 위한 地下補償基準 등에 明示되어 이는 施行令은 지난 7月 25日 公布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이